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37-4 소재 구분건물 (두류동 공동주택(통칭 청라디마크) 주건축물제1동 제4층 제401호 외)
의뢰인	지저새마을금고이사장
평가서 번호	대화 17-2409-9-00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개작(改作)·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54길 27, 에이동 2층 202호(중산동)
대표전화 : 053-818-3888 FAX : 053-818-4888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양창민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 지사장 최 장 일 (서명·날인)

양창민 (인)

최장일 (인)

감정평가액	이십사억육천칠백만원정 (₩2,467,000,000.-)				
의뢰인	지저새마을금고이사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NPL)		
제출처	지저새마을금고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 09. 11	2024. 09. 11	2024.09.12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6세대	구분건물	6세대	- 2,467,000,000
	합계				₩2,467,000,000.-
		이	하	여	백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박규창 (인)		
	박규창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37-4번지 "두류동 공동주택(통칭 청라디마크)" 주건축물제1동
주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자	2021. 12. 23
건물의 구조	벽식구조 및 라멘조(평지붕)
층수	지상 9층
건물의 규모	24세대

기 호	구 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권면적 (㎡)	전용률(%)	용도
가	제4층 제401호	84.9073	18.8075	103.7148	61.4293	81.87	아파트
나	제5층 제503호	122.1075	25.3609	147.4684	88.3433	82.80	아파트
다	제6층 제601호	84.9073	18.8075	103.7148	61.4293	81.87	아파트
라	제6층 제602호	84.1099	17.2112	101.3211	60.8524	83.01	아파트
마	제8층 제801호	84.9073	18.8075	103.7148	61.4293	81.87	아파트
바	제8층 제802호	84.1099	17.2112	101.3211	60.8524	83.01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성남초등학교" 복측 인근에 위치하는 두류동 공동주택(통칭 청라디마크)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1호 외 5개호에 대한 공매(NPL)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이론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9월 11일 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년 9월 11일임.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5.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2. 감정평가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 가.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음.
- 나. 대상물건 가~바)는 이해관계인 부재 및 시건장치로 인해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단지 내 동유형 아파트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다. 대상물건은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후 「집합건물 구분평가 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지침」을 기준하여 배분하였으니 공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1.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 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원가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적정한 수익 및 환원율의 파악이 어려워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한 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대상물건은 위치, 부근의 상황, 규모,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 인근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함.

$$\text{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

2.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2.1.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 호	소재지 지번	동·층·호	전유면적(m ²)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비 고
				사용승인일	거래단가 (원/m ²)	
사례1	두류동 2348 두류파크 KCC 스위트	제104동 제5층 제505호	84.97	2024.05.26.	438,000,000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2023.07.21	5,154,760	
사례2	두류동 2348 두류파크 KCC 스위트	제107동 제5층 제505호	84.96	2023.09.23.	464,000,000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2023.07.21	5,461,393	
사례3	두류동 486-2 삼정그린빌	제102동 제11층 제1103호	111.4884	2023.03.01.	555,000,000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2002.05.27	4,978,096	

2.2. 유사 물건의 평가선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 호	소재지 지번	동·층·호	전유면적 (㎡)	기준시점	목적	감정평가액(원)	비 고
				사용승인일		평가단가(원/㎡)	
선례 1	두류동 1237-4 두류동 공동주택 통칭 청라디마크	주건축물 제1동 제7층 제702호	84.1099	2024.08.21	공매	392,000,000	대상물건 건물 내 평가선례
				2021.12.23		4,660,56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3. 정상가격 수준 검토

용 도	전유면적당 가격 수준	비 고
아파트	4,600,000 ~ 4,700,000원/㎡ 내외	대상물건 유사물건 (층별·위치별에 따라 상이함)

2.4. 최근 1년간 경매 낙찰가율(2023-09-01 ~ 2024-08-31)

(출처: 인포케어)

용 도	소 재 지	낙찰가율(%) (총 낙찰가/ 총 감정가)*100	낙찰률 평균(%) (낙찰가율합계/ 낙찰건수)	낙찰 건수
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82.24	82.39	188

3.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3.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사례 1, 3>을 선정하였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분	소재지 지번	동·층·호	전유면적 (㎡)	거래일자	거래가액(원)	비 고
				사용승인일	거래단가(원/㎡)	
사례 1	두류동 2348 두류파크 KCC 스위첸	제104동 제5층 제505호	84.97	2024.05.26	438,000,000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2023.07.21	5,154,760	
사례 3	두류동 486-2 삼정그린빌	제102동 제11층 제1103호	111.4884	2023.03.01	555,000,000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2002.05.27	4,978,096	

3.2. 사정보정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3. 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대상물건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지가변동률은 토지에 대한 자료로 적용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시점수정함.

■ 대구 달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1 = 100.00)

대구 달서구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	94.1	95.7	97.1	98.1	99.0	100.0	100.4	100.6	100.6	100.6	100.5	100.2
2022년	99.7	99.0	97.8	96.8	95.7	94.7	94.0	92.8	91.7	90.3	88.3	85.5
2023년	82.9	80.3	78.8	77.7	77.2	77.0	76.6	76.8	77.0	77.2	77.3	77.0
2024년	76.6	76.1	75.6	75.5	75.3	74.8	74.3	-	-	-	-	-

"거래사례 1"의 거래시점(2024.05.26) 적용 지수	75.5
대상물건의 기준시점(2024.09.11) 적용 지수	74.3

거래시점 : 2024.05.26, 2024년 04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4.09.11, 2024년 08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 07월 지수를 적용함

■ 시점수정치 결정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지수	$74.3/75.5 \approx 0.98411$
--------------------------	-----------------------------

"거래사례 3"의 거래시점(2023.03.01) 적용 지수	80.3
대상물건의 기준시점(2024.09.11) 적용 지수	74.3

거래시점 : 2023.03.01, 2023년 02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4.09.11, 2024년 08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 07월 지수를 적용함

■ 시점수정치 결정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지수	$74.3/80.3 \approx 0.92528$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4. 개별요인(가격형성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주거용)

요 인	세 항 목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사례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격차율 계
가	사례 1	1.00	0.92	0.99	1.000	0.911
나	사례 3	0.90	1.03	0.94	1.000	0.871
다	사례 1	1.00	0.92	1.01	1.000	0.929
라	사례 1	1.00	0.92	1.00	1.000	0.920
마	사례 1	1.00	0.92	1.02	1.000	0.938
바	사례 1	1.00	0.92	1.01	1.000	0.929

기 호	구 분	개별요인 비교 내용
가	단지내부요인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등에서 열세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나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단지내부요인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등에서 우세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다	단지내부요인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등에서 열세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에서 우세함.
라	단지내부요인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등에서 열세함.
마	단지내부요인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등에서 열세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에서 우세함.
바	단지내부요인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등에서 열세함.
	호별요인	위치별 효용 등에서 열세하나, 층별효용 등에서 우세함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4.1. 단가 결정

산식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제요인 비교								
기 호	구 분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 고
가	제4층 제401호	5,154,760	1.000	0.98411	0.911	4,621,367	4,620,000	-
나	제5층 제503호	4,978,096	1.000	0.92528	0.871	4,011,942	4,010,000	-
다	제6층 제601호	5,154,760	1.000	0.98411	0.929	4,712,678	4,710,000	-
라	제6층 제602호	5,154,760	1.000	0.98411	0.920	4,667,023	4,660,000	-
마	제8층 제801호	5,154,760	1.000	0.98411	0.938	4,758,334	4,750,000	-
바	제8층 제802호	5,154,760	1.000	0.98411	0.929	4,712,678	4,710,000	-

4.2. 시산가액 결정

산식 = 면적 × 단가						
기 호	구 분	전유면적(㎡)	단가(원/㎡)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 고
가	제4층 제401호	84.9073	4,620,000	392,271,726	392,000,000	-
나	제5층 제503호	122.1075	4,010,000	489,651,075	490,000,000	-
다	제6층 제601호	84.9073	4,710,000	399,913,383	400,000,000	-
라	제6층 제602호	84.1099	4,660,000	391,952,134	392,000,000	-
마	제8층 제801호	84.9073	4,750,000	403,309,675	403,000,000	-
바	제8층 제802호	84.1099	4,710,000	396,157,629	390,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감정평가액 결정

5.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기 호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가	392,000,000	-
나	490,000,000	-
다	400,000,000	-
라	392,000,000	-
마	403,000,000	-
바	390,000,000	-

5.2. 시산가액 결정

대상물건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선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3. 감정평가액 결정

산식 = 면적 x 단가						
기 호	구 분	전유면적(㎡)	단가(원/㎡)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 고
가	제4층 제401호	84.9073	4,620,000	392,271,726	392,000,000	-
나	제5층 제503호	122.1075	4,010,000	489,651,075	490,000,000	-
다	제6층 제601호	84.9073	4,710,000	399,913,383	400,000,000	-
라	제6층 제602호	84.1099	4,660,000	391,952,134	392,000,000	-
마	제8층 제801호	84.9073	4,750,000	403,309,675	403,000,000	-
바	제8층 제802호	84.1099	4,710,000	396,157,629	390,000,000	-
합 계		-			2,467,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Page :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남5길 29	1237-4 두류동 공동주택 주건축물 제1동	아파트	벽식구조 및 라멘조 평지붕 9층				통칭 청라디마크
				1층	79.5822			
				1층	49.0502			
				1층	16.0638			
				2층 ~ 9층	각 344.365			
				옥탑1층	31.9031			
				제2층 일반주거지역	1,685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1호	84.9073	84.9073	392,000,000	
				소유권 1.-----	61.4293	61.4293		
				대지권	1,658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37-4	대					비준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배분내역 117,600,000 274,4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Page :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나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3호	122.1075	122.1075	490,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88.3433			
				1.-----	-----	88.3433		
				대지권	1,658			
다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1호	84.9073	84.9073	400,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61.4293			
				1.-----	-----	61.4293		
				대지권	1,658			
라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2호	84.1099	84.1099	392,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60.8524			
				1.-----	-----	60.8524		
				대지권	1,658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Page : 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마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8층 제801호	84.9073	84.9073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배분내역 117,600,000 274,400,000	비준가액
								403,000,000	
							61.4293 1.----- 대지권	61.4293	
바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8층 제802호	84.1099	84.1099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배분내역 120,900,000 282,100,000	비준가액
								390,000,000	
							60.8524 1.----- 대지권	60.8524	
합 계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배분내역 117,000,000 273,000,000 ₩2,467,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성남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근거리에 도시철도2호선(내당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1) 건물의 구조 가~바) 벽식구조 및 라멘조 평지붕 지상 9층건 중 제4층 제401호 외 5개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적벽돌쌓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강마루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임. 2)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냉난방설비등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있으며,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등고 평탄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임.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서측으로 폭 약 8m, 남서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 3m 정도의 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달1)(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0-05-27)(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 상세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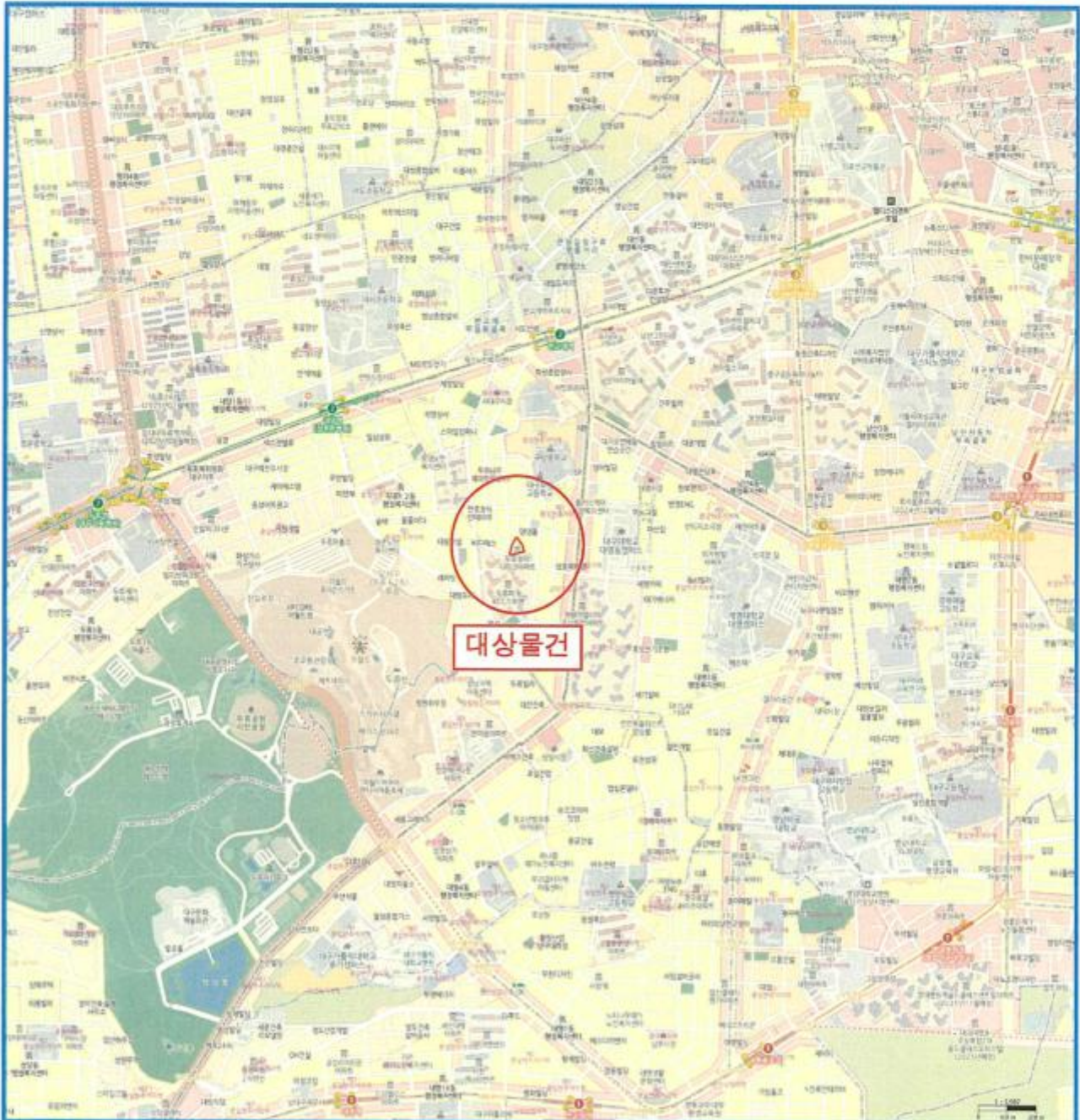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기호()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37-4
 “두류동 공동주택(통칭 청라디마크)” 주건축물제1동 제4층 제4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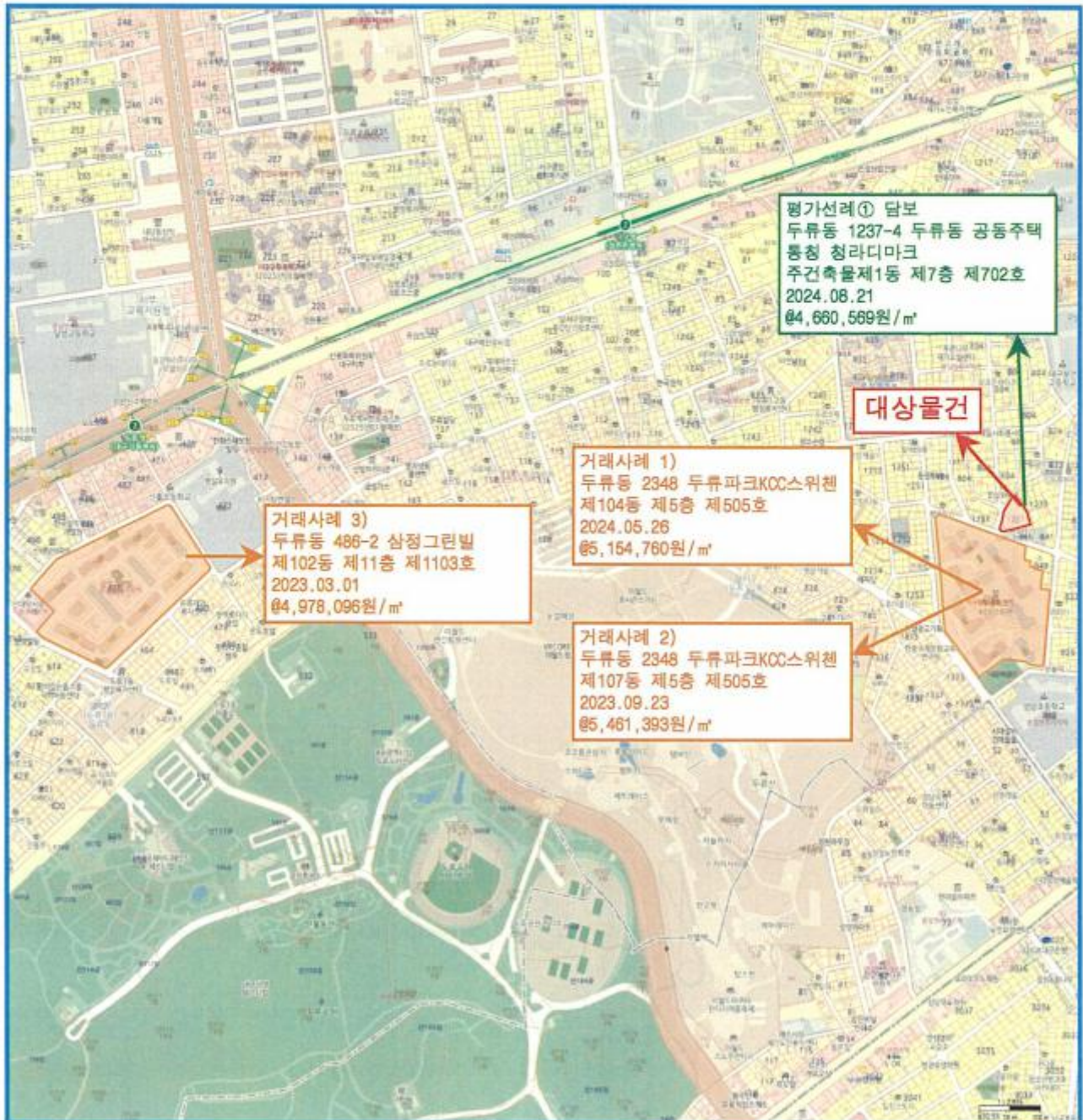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기호()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37-4
“두류동 공동주택(통칭 청라디마크)” 주건축물제1동 제4층 제4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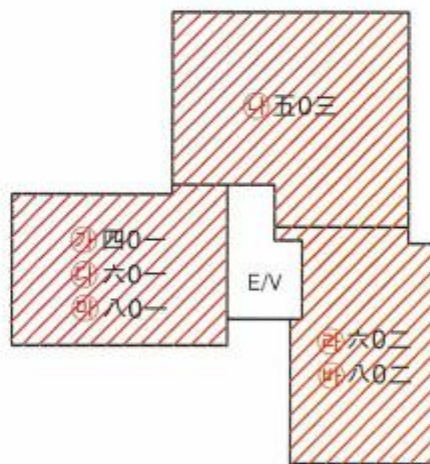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No Scale

<호별배치도>



대상물건<"두류동 공동주택(통칭 청라디마크)"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1호 외>

현 황 사 진



【 대상물건 전경 】



【 대상물건 기호 가) 】

현 황 사 진



【 대상물건 기호 나) 】



【 대상물건 기호 다) 】

현 황 사 진



【 대상물건 기호 라) 】



【 대상물건 기호 마) 】

현황 사진



【 대상물건 기호 바) 】



【 대상물건 주위환경 】